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 및 상위법령 제명변경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보전법」)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